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03

발의연월일: 2020. 9. 24.

발 의 자:인재근・소병훈・허 영

송갑석 • 기동민 • 김원이

최혜영 · 최종윤 · 강선우
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9년 3월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5,511명인데,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,690명으로 총 포상자의절반에 달하고 있음.

이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님.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묘 지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,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).

법률 제 호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의 제목 중 "지원"을 "지원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한다.
-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2(묘지관리 비용의 <u>지원</u>)	제26조의2(묘지관리 비용의 <u>지원</u>
(생 략)	<u>등</u>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
	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
	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총리령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
	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
	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
	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
	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
	른 비용지원 및 제2항에 따른
	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유공자
	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
	과의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
	<u>다.</u>